

#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(의안번호 제2706호)

## 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11. 10. 이쌍자 의원 등 6인  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11. 21.  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3. 11. 28. 의회운영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### 2. 개정이유

- 고성군의회 의안의 제출 시기를 변경하여 심도 있는 의안 검토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의 안전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

### 3. 주요내용

- 예산안 제안설명 전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규정 (안 제61조제1항)
- 의안 제출 시기 변경 (안 제19조제3항)

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83조  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  
다.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3-40호  
- 예고기간: 2023. 11. 13.(월) ~ 2023. 11. 20.(월)  
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 없음

## 5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현행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, 복잡다기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상존하고 있는 현재 행정의 특성상 제출된 의안의 충분한 검토 및 심의에 시간적 제약이 뒤따르고 있어 의회에서 의결한 의안은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로 하여 심도있는 검토 및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으로
  
- 본 개정규칙안은 의안 제출 시기를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로 하는 것으로 보다 효율적인 의안 검토와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의회의 의안 심의기능 강화와 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제고하는 등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6. 질의 및 답변요지: 없음.

7. 토 론 : 없음.

8. 심사결과 : 2023. 11. 28. 원안가결